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세액감면 대상 확대〉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72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업도시개발구역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박정하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11.

다. 회 부 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Ⅲ. 검토의견

1. 기업도시개발구역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박정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17) ☐ 감면대상(제1항제1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u>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u> 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 감면율: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2028. 12. 31.	☐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제1항제1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u>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u> - <u>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 박정하의원안 2026. 3. 11. 발의(의안번호 17372)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법 제121조의17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의 대상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

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임.¹⁾ 세액감면율은 최초 3년간 100%이고, 이후 2년간 50%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 지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²⁾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포 후 정부가 6개 시범사업을 선정(2005년 7~8월)하였으며, 현재는 4개 지역에서 기업도시를 개발 중임.

[기업도시 추진현황]

구분	면적 (만㎡)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기업유치
충주	701	'07-'12	6,352	준공('12), 분양률 100%	23개사 유치
원주	529	'08-'19	10,425	준공('19), 분양률 100%	50개사 유치
태안	1,546	'07-'25	1조 2,982	공정률 61%, 골프장 4개소 운영 중, 콘도 및 화훼보전화센터 등 운영	골프장 4개소, 콘도 등 유치
영암/ 해남	3,379	'06-'30	3조 2,611	3개 지구로 개발 (구성지구 착공 '13.1, 삼호지구 착공 '14.6, 삼포지구 1단계 F1 경기장 사용 등)	골프장 4개소, 태양광발전소 등 유치

자료: 재정경제부

[기업도시 입주, 투자, 고용현황]

구 분	입주현황	투자현황	일자리 창출
충주기업도시	23개사 가동	1조 5,687억원	4,214여명 고용
원주기업도시	35개사 가동	9,281억원	4,232여명 고용
태안기업도시	10개사 가동 1개사 공사중	2,534억원	760여명 고용
영암·해남 기업도시	1개사 가동 3개사 공사중	4,473억원	183명 고용

자료: 재정경제부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의 조세지출은 2024년 기준 36억원이고, 2025년 조세지출은 57억원으로 전망되며, 2026년 조세지출은 58억원으로 전망됨.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 세액감면 제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 세액감면	56	75	65	26	56	8	49	72	36	57	58

주) 2025년 및 2026년은 전망치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현행 세액감면 제도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보다 비용부담 및 불확실성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이전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업의 사업장 이전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도시개발구역 인근의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기존 사업장의 이전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할 경우 비수도권 및 인접 지역에서 기업도시개발 구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동 세액감면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동 세액감면 제도가 기존 사업장의 이전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만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장의 이전에 비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더 크기 때문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비수도권 기업이 기업도시개발 구역으로 이전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없고 사업장이 위치했던 기존 지역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만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 하에서도 기업이 수도권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법 제63조의2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해줌.³⁾

[공장 및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감면율]

대상지역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4년 50%	5년 100%+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5년 50%	5년 100%+3년 50%
그 외	10년 100%+5년 50%	7년 100%+4년 50%

문 의 처

02)6788-5155

3)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같은 감면 요건, 감면율, 한도를 적용받는 타 지역에 대한 세액감면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만 적용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현행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